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5일

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용료 감면대상 변경(안 제12조)
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수탁자의 관리운용 능력평가 신설(안 제16조)
- 위탁 취소 사유 보완(안 제17조)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20조 ~ 제25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은

-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구미지역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리더쉽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